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14

발 의 년 월 일 : 2024년 08월 12일
발 의 자 : 최민규, 강석주, 김경훈, 김동욱, 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ㆍ석, 박춘선, 서상열, 유만희, 윤기섭, 이상욱, 이종태, 임춘대, 장태용, 허ㆍ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○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체험관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. (안 제2조제1항)

나.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한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2조제4항)

다.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의 체험관 휴관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)

라. 체험관 대상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4조)

마. 체험관 인솔자 인원의 추가 규정을 삭제함. (안 제5조)

바. 체험관의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명을 “시설의 관리”로 변경함. (안 제8조)

사. 체험관 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체험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3조)

아. [별표] 체험관 이용료 규정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기본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조례”를 “조례 및 「소방기본법」 제5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설날 및 추석”을 “설날 및 추석 연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한다.”를 “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항 번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재산 및 물품관리)”를 “(시설의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 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.

[별표]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설치 및 기능)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(이하 “체험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 (설치 및 기능) ① 이 조례 및 「소방기본법」 제5조에 따라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 (생 략)	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----------.
1. 1월 1일, 설날, 추석	1. ------ 설날 및 추석 연휴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이용대상자) ①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	제4조(이용대상자) 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----------.

1 ~ 3 (생 략)	1 ~ 3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<삭 제>
제5조 (이용방법 등) ①·② (생 략)	제5조 (이용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인이 동반할 수 있으며 20명 초과시에는 25명까지 마다 1인씩 추가되어야 한다.	③----------. <후단 삭제>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 (재산 및 물품관리) <신 설>	제8조 (시설의 관리) ① 시장은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①·② (생 략)	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<신 설>	제13조 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.
[별표] (생 략)	<삭 제>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이용대상자)를 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소방재난본부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〔참고〕 2024년도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4조	시민안전체험관 운영	1,804,265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☏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